

## 파주시읍·면·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### □ 제안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교하면 조리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제명을 “파주시읍·면·동·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” 로 개정하도록 함.
- 교하면·조리면을 각각 교하읍·조리읍으로 개정하도록 함. (안 별표)
- 읍의 순서를 문산읍, 파주읍, 법원읍, 조리읍으로 정하도록 함. (안 별표)
- 부칙에 읍 승격과 관련된 “파주시청및읍·면·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” 등 8건의 조례 개정.

### □ 검토의견

- 인구규모가 3만이상인 교하면과 조리면이 지방자치법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2002년 3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읍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

- 관련조례의 제명과 기관명칭, 읍의 순서를 개정하는 것으로
- 개정조례안의 부칙에 읍 승격과 관련하여
  - 파주시청및읍·면·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,
  -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,

- 파주시공설묘지및운영조례,
- 파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,
-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,
-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,
- 파주시통·리·반설치조례,
- 파주시통·리장정원조례등 8건의 조례에서 별표에 정한 각각의 명칭과 순서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.

### 지방자치법

**제4조 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** ③자치구가 아닌 區와 邑·面·洞의 名稱과 區域은 종전에 의하고, 이를 變更하거나 廢置·分合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 다만, 區域變更은 特別市長·廣域市長·道知事(이하 “市·道知事”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